

< 공모주 청약안내 >

1) 청약자격 및 한도

구분	내용													
청약자격	<p>1) 오프라인 청약: 청약 시 정상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정기등급 프라임등급 이상(법인제외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48 421 1198 533"> <tr> <td>프라임등급 (정기등급)</td> </tr> <tr> <td>직전 분기 자산평잔 1천만원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[오프라인 청약 :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]</p> <p>2) 온라인 매체 (WTS,HTS,MTS,ARS) 청약시: 청약 시 정상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</p> <p>→ WTS, HTS, MTS 청약 참여 시, 청약 약관 승인 후 청약 가능</p> <p>→ 영업점, 고객감동센터, ARS 청약 참여 시, 청약 약관 미승인 계좌도 청약 가능 단, 청약 약관 SMS 발송 후 청약 가능. 핸드폰 번호 미보유시 약관수신불가로 청약 불가. (영업점 및 온라인 매체에서 청약 약관 승인 후 청약 가능)</p>	프라임등급 (정기등급)	직전 분기 자산평잔 1천만원 이상											
프라임등급 (정기등급)														
직전 분기 자산평잔 1천만원 이상														
우대 (200%)	<p>1) 고객등급 HNW 등급 이상 개인고객 (CIF 기준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48 831 1198 958"> <tr> <td>HNW등급 (정기등급)</td> </tr> <tr> <td>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(법인 제외, 법인은 한도 100%)</td> </tr> </table> <p>2) 연금보유고객(CIF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연금펀드: 직전월 펀드 말잔 4 백만원 이상(예수금 제외) - 구연금펀드: 직전월 말잔 4 백만원 이상 - 신연금펀드와 구연금펀드 동시 보유고객 (신연금펀드 말잔과 구연금펀드 말잔 합산 4 백만원 이상) <p>3) 펀드보유고객(CIF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펀드 평가금액 직전 월 말잔 기준 5 천만원(CIF 기준) 이상 (단, 로보펀드의 경우 1 천만원 이상) -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 -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 -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 <p>4) 개인형퇴직연금(IRP) 보유 고객 (CIF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 직전월 말잔 4 백만원(CIF 기준)이상 (예수금 제외) <p>5) 타사대체 순입고 1천만원 이상 (직전월 포함 3개월 합산)</p> <p>6) 국내 및 해외주식 거래 1천만원 이상 (직전월 포함 3개월 평균)</p> <p>7) 중개형 ISA계좌 순납입 1천만원 이상 (순납입=총입금-총출금)</p> <p>※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(정기등급 프라임등급)이상 충족할 것</p>	HNW등급 (정기등급)	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(법인 제외, 법인은 한도 100%)											
HNW등급 (정기등급)														
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(법인 제외, 법인은 한도 100%)														
수수료	<p>1) 공모주 청약 수수료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95 1753 1361 201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모주 청약 수수료</th> <th>수수료 면제 대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오프라인 (유선 포함)</td> <td>3,000 원</td> <td rowspan="2">고객등급 HNW 이상 또는 공모주 미배정 고객</td> </tr> <tr> <td>온라인 (ARS 포함)</td> <td>2,000 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기타사항</td> <td colspan="2">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법인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모주 청약 수수료	수수료 면제 대상	오프라인 (유선 포함)	3,000 원	고객등급 HNW 이상 또는 공모주 미배정 고객	온라인 (ARS 포함)	2,000 원	기타사항	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		법인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	
구분	공모주 청약 수수료	수수료 면제 대상												
오프라인 (유선 포함)	3,000 원	고객등급 HNW 이상 또는 공모주 미배정 고객												
온라인 (ARS 포함)	2,000 원													
기타사항	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													
	법인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													

배정기준 (일괄 청약방식)	<p>1)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'균등방식'으로 배정하고,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함. 이 경우 묶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'균등 배정'이 '동일 수량'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.</p> <p>2)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,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,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한다. 다만,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(금액)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증거금까지 배정된다.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,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한다.</p> <p>3) 다만, 청약 접수 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 최소화를 목적으로 양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 가능.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-

2) 청약방법

구 분	방 법	청약시간
영업점 내방	당사 양식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 청약	10:00 ~16:00
HTS	공모주/ELS청약 종합화면(TR 4771), 크레온(TR 1206)	
홈페이지	인터넷뱅킹 → 청약 → 공모주 청약신청 → 청약조회/취소	
모바일 (CYBOS Touch,, 크레온)	주식 → 청약/주식권리 → 공모주청약/취소	
유선청약	청약약정 등록 고객에 한하여 가능	
ARS청약	ARS 청약 메뉴: 6 번 청약서비스 → 1 번 공모주청약	

- ✓ 청약서 1 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 청약합니다.
- ✓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은 불가하오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청약자의 1 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.
- ✓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✓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9 조 제 5 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)께서는 청약하시기 전,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.
- ✓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, 동법 시행령 제 132 조에 의거,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, 전화, 전신, 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- ✓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,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✓ 추가납입 동의 시,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 종료일 익영업일 17 시에,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환불/납입일 13 시에 자동출금 처리됩니다.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납입처리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출금가능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) 청약단위

- ✓ 일반청약자는 대신증권(주) 본/지점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.
- ✓ 대신증권의 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는 **5,000 주**이며, 우대고객의 최고청약한도는 **10,000 주**입니다.
- ✓ 청약단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,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하위 단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청약주식수	청약단위
20 주 이상 ~ 100 주 이하	10주
100주 초과 ~ 500주 이하	50주
500주 초과 ~ 1,000주 이하	100주
1,000주 초과 ~ 5,000주 이하	200주
5,000주 초과 ~	500주

4) 환불

- ✓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 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신증권(주) 홈페이지(www.daishin.com)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.

5) 기타사항

- ✓ 공모주 청약 규모의 급증으로 인해 상장일에 타사대체 요청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, 타사대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✓ 본 공고는 향후 발행예정인 증권의 공모를 위한 단순 광고이며,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.
- ✓ 공모예정금액, 청약일/납입일 등 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은 청약일 전에 확정될 예정이며, 투자설명서, 예비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(<http://dart.fss.or.kr>)에는 발행사의 사업보고서,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있으니 투자여사를 결정하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✓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✓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✓ 「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(주식청약증거금 등) ⑥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용자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일반청약자에게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어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
- ✓ IPO 공모주식은 상장 초기 가격변동성이 크며,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여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✓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를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의 경우,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

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.

- ✓ 특정 실명확인번호(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고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투자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) 외의 번호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, 중복청약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공모주 청약 참여가 제한됩니다.
- ✓ 청약내역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배정 및 환불금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